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21호 2015. 10. 08.(목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57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
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입법예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3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
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입법예고 ----- 11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56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0. 0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건지로 186외 2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09.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5-10-08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-354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86 (가좌동)	2009-09-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2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24-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88번길 5-4 (오류동)	2008-12-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6-5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23번길 10 (불로동)	2013-07-30	검단로 시작지점부터 약 7,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5-10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7 (공촌동, 클린타운(셀프))	2009-07-10	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행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행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<경명>명칭에서 부여	
5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2-6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5번길 7-1 (경서동)	2009-09-22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3-6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5번길 3-6 (원당동)	2008-12-31	고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3-3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5번길 3-8 (원당동)	2008-12-31	고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9-12	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번길 14 (연희동)	2010-11-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9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4-8	인천광역시 서구 도담5로 81 (오류동)	2012-10-25	도담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71-8	인천광역시 서구 두밀로71번길 55 (대곡동)	2013-07-30	두밀로 시작지점부터 약 7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84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34-11 (마전동)	2008-12-31	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	
12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9-10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55 (마전동)	2008-12-31	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4	인천광역시 서구 모월곶로 41 (경서동)	2012-10-25	"모월곶" 이란 경서동의 옛 지명 반영	
14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-15, 136-14, 136-2	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-19 (원창동, 사)	2009-07-10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17-4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9-30 (금곡동)	2009-09-22	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6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4-2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19 (연희동)	2009-09-22	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	
17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4-1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25-14 (검암동)	2009-09-22	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,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8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-108	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15번길 7 (경서동)	2013-07-30	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9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2-7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8 (당하동)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20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70-8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57 (오류동)	2008-12-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1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4-2	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18 (경서동)	2012-10-25	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2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4-1	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20 (경서동)	2012-10-25	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3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4-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8 (경서동)	2012-03-30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4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B3블럭4로트	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길 20 (가정동)	2012-10-25	청중로 시작지점부터 4,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57호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8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15. 10. 8.
2. 고시방법 : 구보, 구 홈페이지 등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의 길이 연장
- 도로구간 변경 조서 참조
4.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· 심의 결과 · 내용 및 절차		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		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	동의 만료일부 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	결과 통보

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도로구간(종속) 연장 : 건지로

구분	도로 길이 (km)	폭(m)	위계	시작지점	끝지점	중심선	관할행정구역 (행정동)	기초 간격 (m)	기초번호	도로명	도로명 부여사유	도로구간 변경사유
현행	0.262	32	로	석남동 223-179	가좌동 173-84	별첨	석남동, 가좌동 (석남2동, 가좌1동)	20	98-1 ↔ 98-28	건지로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 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변경	0.55	32	로	석남동 223-179	가좌동 173-474	별첨	석남동, 가좌동 (석남2동, 가좌1동)	10	98-1 ↔ 98-112	건지로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 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가좌동 173-474 도로 개설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과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연장함.

○ 도로구간 변경 도면

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137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8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“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(‘15.4.1 국가 정책조정회의)” 과 관련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 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

2. 주요내용

-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본 사업의 중단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
 - ※ 폐지이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경감 적용 및 개인별 생활실태를 고려한 소득별 맞춤형급여 지원 검토

3. 의견제출

- 이 폐지시행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생활보장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5871) 또는 Fax(560-2737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폐 지 이 유	○ 「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」과 관련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방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폐지 ▶‘15.4.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방침
주 요 내 용	○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의 종단을 위하여 시행규칙 폐지 ▶ 폐지이후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에 대하여 월 건강보험료 일부경감 적용 및 개인별 생활 실태를 고려한 소득별 맞춤형급여 지원 검토
폐 지 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해 당 없 음”
관계법령 발취	“별 지 참 조”
관련사업 계획	“해 당 없 음”
예산수반사항	“해 당 없 음”
기타 참고사항	“해 당 없 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.

2. 폐지이유

- 「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」에 따라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방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은 폐지
 - ▶ ‘15.4.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

3. 주요내용

-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종단을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 폐지
 - ▶ 우리구는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중 월 1만원 이하 소액 납부자의 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, 이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부 부담률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중복사업이며, 또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일부 경감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

4. 참고사항

- 가. 폐 지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.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0조제2항 제7호 제9호
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1항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**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
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사회복지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, 제4항

제20조(사회보장위원회)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

9.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, 제3호, 제6호

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.

2. 65세 이상인 사람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6.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137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8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“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(‘15.4.1 국가정책조정회의)” 과 관련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 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

2. 주요내용

-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본 사업의 중단을 위한 조례 폐지
 - ※ 폐지이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경감 적용 및 개인별 생활실태를 고려한 소득별 맞춤형급여 지원 검토

3. 의견제출

- 이 폐지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생활보장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5871) 또는 Fax(560-2737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폐 지 이 유	<p>○ 「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」과 관련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</p> <p>▶ ‘15.4.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방침</p>
주 요 내 용	<p>○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의 중단을 위하여 조례 폐지</p> <p>▶ 폐지이후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에 대하여 월 건강보험료 일부경감 적용 및 개인별 생활 실태를 고려한 소득별 맞춤형급여 지원 검토</p>
폐 지 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해 당 없 음”
관계법령 발취	“별 지 참 조”
관련사업 계획	“해 당 없 음”
예산수반사항	“해 당 없 음”
기타 참고사항	“해 당 없 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.

2. 폐지이유

- 「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」과 관련 “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”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

▶ ‘15.4.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

3. 주요내용

-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,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종단을 위하여 관련 조례 폐지
 - ▶ 우리구는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중 월 1만원 이하 소액 납부자의 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, 이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부담률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중복사업이며, 또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일부 경감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

4. 참고사항

가. 폐 지 안 : “별지 참조”

나. 신.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
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
라. 관계 법령 발췌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

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1항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
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, 제4항

제20조(사회보장위원회)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

9.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, 제3호, 제6호

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.

2. 65세 이상인 사람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6.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